

인천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46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464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단792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C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 선고 2020. 9. 1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단79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6. 5. 26.1) 접수 제126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말소등기는 어떤 등기의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해당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70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1.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판사김종민

판사임정택

판사윤재남

별지

1) 소장 청구취지에는 '2016. 5. 6.'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키로 보인다.